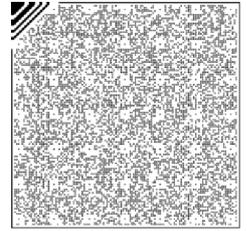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의 운전중 영상물 시청 금지 등 관리감독 강화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택시기사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반복하여 보면서, 운전 집중하지 않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부는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 단체에서는 상기 법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도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보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는 등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최상욱	시설사무관	서윤원	행정사무관	노지훈	교통서비스정	전결 2024. 4. 1.
						책과장	이주열

협조자

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2051 (2024. 4. 2.)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 서비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755 팩스번호 044-201-5581 / [csw7168@molit.go.kr](mailto:csw7168@molit.go.kr) / 대한민국 공개